

# 평창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및제출자 : 1999. 11 . 19 평창군수(자치행정과장)
- 나. 회부일자 : 1999. 12. 20
- 다. 상정일자 : 제73회 평창군의회(정기회) 제1차조례특위('99.12.21)  
상정·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과장 이경식)

### 가. 제 안 이 유

- 평창군행정정보공개조례의내용이 '98. 1.1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령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조례를 규정할 필요가 없음에 따라 행정규제 완화차원 차원에서 평창군행정정보공개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### 나. 주 요 내 용

- 평창군행정정보공개조례 폐지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허해성)

- 본조례는 1996.12.31일 법률 제5242호로 제정되어 '98.1.1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음에 따라

본 조례를 폐지하고 존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조항인  
 비용부담과 심의위원회는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와  
 평창군정보공개규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규제  
 완화차원에서 폐지가 이루어 지는 사항으로서 별문제점이  
 없다고 판단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요 지	답 변 요 지
○ 본 조례개정시 비용부담에 대하여는 제증명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?	○ 제증명 조례는 여러부서에서 준비중에 있어 같이 포함하여 개정할 계획임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붙 임 : 평창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1부 . 끝 .